

의안번호	2211771
의 퇴 인	전진숙의원
회 답 일	2024.9.17.
추 계 번호	25B4020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3조 (지하층)	건축물의 소유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(제3항 신설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(제4항 신설)	의무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53조(지하층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과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침수예방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

기준 등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, 추계 대상 지역과 해당 지역 지하층 건축물별로 필요한 침수예방시설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음
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: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음¹⁾

[표 1] 시·도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침수위험지구) 현황

(단위: 개소)

시도	합계	정비 완료	정비 대상							
			소계	침수 위험	붕괴 위험	유실 위험	취약 방재	고립 위험	해일 위험	상습 가뭄
계	3,001	1,962	1,039	832	43	42	34	24	45	19
서울	16	14	2	2	—	—	—	—	—	—
부산	71	47	24	20	—	—	—	—	4	—
대구	53	38	15	15	—	—	—	—	—	—
인천	16	16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광주	42	30	12	7	—	—	5	—	—	—
대전	5	1	4	4	—	—	—	—	—	—
울산	36	25	11	11	—	—	—	—	—	—
세종	17	11	6	6	—	—	—	—	—	—
경기	117	74	43	39	2	—	2	—	—	—
강원	370	274	96	55	6	9	9	13	3	1
충북	263	176	87	69	3	4	1	4	—	6
충남	212	117	95	85	1	1	1	2	4	1
전북	384	272	112	97	9	—	1	2	1	2
전남	408	245	163	125	11	10	—	—	15	2
경북	478	290	188	144	89	14	14	1	4	3
경남	407	246	161	137	2	3	1	2	12	4
제주	106	86	20	16	1	1	—	—	2	—

자료: 행정안전부(2025), 「2025 행정안전 통계연보」

- 방재지구: 풍수해, 산사태, 지반의 붕괴,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²⁾³⁾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제12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)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,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·고시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지사를 거쳐(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.

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37조(용도지구의 지정)

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

[표 2] 시·도별 방재지구 지정 현황

(단위: m²)

도시명	방재지구					
	소계		시가지방재지구		자연방재지구	
	개소	면적	개소	면적	개소	면적
합계	32	4,949,008	11	2,356,962	21	2,592,046
경기도	3	96,780	—	—	3	96,780
전라남도	27	4,790,443	11	2,356,962	16	2,433,481
경상북도	2	61,785	—	—	2	61,785

자료: 국토교통부(2025), 「2024년 도시계획현황」

IV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(제1호~제3호 생략)

4. 방재지구: 풍수해, 산사태, 지반의 붕괴,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3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1조(용도지구의 지정)

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·방재지구·보호지구·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(제1호~제3호 생략)

4. 방재지구

가. 시가지방재지구: 건축물·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

나. 자연방재지구: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, 하천변,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